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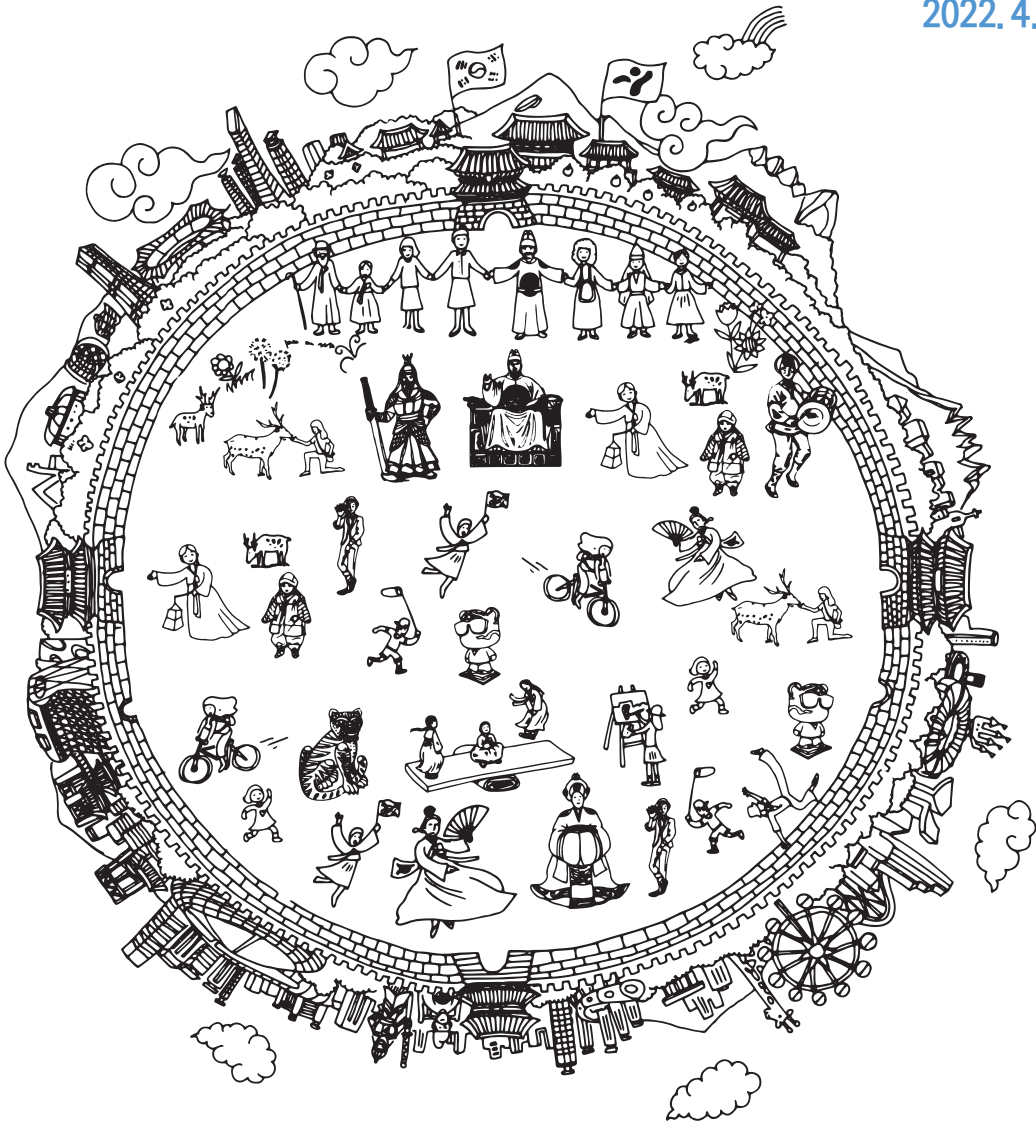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74호
2022. 4. 11.(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1038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2-105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22-10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38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다.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안 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77

(2) E-mail : jkcha705@seoul.go.kr

(3) 우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02-2133-5824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5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사무분장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재난본부 조문 정비 및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조정

- (1)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여성’ 단어 삭제(안 제10조의2)
- (2) 서초소방서 내 서초·우면119안전센터간, 구로소방서 내 고일·구로·공단·신도림119안전센터간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2)

나. 부서간 업무 이관, 소관사무 현행화 등 사무분장 정비

- (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 업무를 전략산업기반과로 이관(안 제11조)
- (2) 금융투자과 내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 (3) 기후변화대응과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관리,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고, 소관 사무 현행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내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립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부터 제27조의2)

- (1)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임강사’ → ‘강사’ 용어 정비, 인권센터장 자격요건 신설
- (2) 주요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인권센터 사무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전문경력관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인력 보강(+45명)

－ (직속기관) 소방교 +45

나.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

－ (사업소) 사육운영7급 △1, 농업7급 △1, 농업또는녹지8급 △1, 농업또는녹지9급 △2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2,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2, 전문경력관 다군(동물박제) +1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관리자 확보를 위한 직렬조정

－ (사업소) 보건7급 △5 → 간호7급 +5

라.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 교통·버스 관련 정책 수립,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정원조정

－ (본 청) 행정8급 △1, 시설8급 △2 → 행정7급 +3

－ (사업소) 행정8급 △2 → 의료기술6급 +1, 의료기술7급 +1

마.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

－ 전임강사 → 강사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